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원회 설치) ①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」 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」 제24조부터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농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

<신설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성북구의회 의원 1명
2. 도시농업 업무 소관 국장
3.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4.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
5.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, 구의회의원·공무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

<신 설>

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은 「성북구 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」을 준용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질병,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장기 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

<신 설>

<신 설>

제5조 ~ 제9조 (생 략)

제10조(준용)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 (생 략)

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9조(수당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위원에게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~ 제14조 (현행 제5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제15조(준용) ----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-----.

제16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